

예보업무규정

제 정 1999. 6. 15. 기상청훈령 제318호
 일부개정 2000. 11. 15. 기상청훈령 제351호
 일부개정 2001. 12. 31. 기상청훈령 제370호
 일부개정 2003. 5. 30. 기상청훈령 제388호
 일부개정 2004. 5. 8. 기상청훈령 제403호
 일부개정 2004. 6. 29. 기상청훈령 제406호
 일부개정 2005. 5. 13. 기상청훈령 제416호
 일부개정 2005. 9. 21. 기상청훈령 제431호
 전부개정 2006. 6. 30. 기상청훈령 제454호
 일부개정 2007. 2. 9. 기상청훈령 제484호
 일부개정 2007. 3. 22. 기상청훈령 제486호
 일부개정 2007. 9. 27. 기상청훈령 제511호
 일부개정 2008. 3. 24. 기상청훈령 제538호
 (기상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8. 6. 20. 기상청훈령 제555호
 일부개정 2008. 10. 30. 기상청훈령 제569호
 일부개정 2009. 5. 8. 기상청훈령 제611호
 일부개정 2009. 6. 29. 기상청 훈령 제618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9. 8. 24. 기상청훈령 제633호
 (일몰제 도입을 위한 「예보업무규정」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0. 5. 14. 기상청훈령 제65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 등 일부개정령)
 전부개정 2010. 11. 30. 기상청훈령 제683호
 일부개정 2011. 6. 14. 기상청훈령 제693호
 일부개정 2012. 6. 18. 기상청훈령 제727호
 일부개정 2013. 6. 17. 기상청훈령 제753호
 일부개정 2013. 10. 25. 기상청훈령 제760호
 일부개정 2014. 5. 19. 기상청훈령 제776호
 일부개정 2015. 1. 22 기상청훈령 제791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항공기상청 운영심의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7. 15 기상청훈령 제806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15. 12. 28 기상청훈령 제816호
 전부개정 2017. 1. 13 기상청훈령 제860호
 일부개정 2017. 3. 23. 기상청훈령 제867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18. 3. 15. 기상청훈령 제902호
 일부개정 2018. 6. 1. 기상청훈령 제916호
 일부개정 2019. 4. 30. 기상청훈령 제936호
 일부개정 2019. 9. 9. 기상청훈령 제95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기상기자재관리업무 처리운영규정 등 일괄개정령)
일부개정 2020. 7. 30. 기상청훈령 제987호
일부개정 2021. 1. 25. 기상청훈령 제1003호
일부개정 2021. 8. 12. 기상청훈령 제1013호
일부개정 2022. 11. 30. 기상청훈령 제1059호
일부개정 2023. 5. 11. 기상청훈령 제1078호
일부개정 2023. 11. 15. 기상청훈령 제1093호
전부개정 2024. 5. 30. 기상청훈령 제1119호
일부개정 2025. 3. 27. 기상청훈령 제1142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5개 훈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 2025. 6. 13. 기상청훈령 제115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상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4,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4, 제9조, 제12조에 따라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예보 및 특보에 관한 업무(이하 “예보업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기예보, 영 제10조에 따른 항공기상예보 및 항공기상특보, 영 제11조의2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이 기상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보 및 특보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3.>

1. “육상광역예보”란 도경계나 기후학적 경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넓은 지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2. “육상국지예보”란 시·군 단위 등으로 구분된 지역에 대하여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3. “산지”란 해발고도 600m 이상 또는 들이 적고 산이 많은 지역 중 기상청장이 별도로 정한 구역을 말한다.
4. “해양기상광역예보”란 한반도 주변바다(동해, 서해, 남해)를 도경계와 앞바다 및 먼바다로 구분한 해역 및 대화퇴 해상, 연해주 해상, 규슈해상, 동중국해상의 넓은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5. “해양기상국지예보”란 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중 앞바다를 시·군 경계 등을 이용해 여러 개로 분할한 해역에 행하는 예보를 말한다.
6. “예보관서”란 예보 및 특보 등을 생산하는 예보국,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을 말한다.
7. “발효”란 발표된 특보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8. “통보문”이란 발표된 예보나 특보 등의 통보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정리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9. “실황”이란 현재 나타나는 날씨의 상태를 말한다.
10. “일기도”란 일기나 기상요소의 분포를 지도 위에 표시하고 분석한 것을 말한다.
11. “하늘상태”란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는 정도를 맑음, 구름많음, 흐림으로 표현한 것을 말한다.

12. “유의파고”란 해상의 한 지점에서 통과하는 파도 중 높이가 높은 순으로 3분의 1까지의 파도 높이를 평균한 값을 말한다.

13. “강수확률”은 예보한 날씨와 유사한 기상상황에서 강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확률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3의2. “체감온도”란 습도나 바람의 영향을 반영하여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 정도를 산출한 온도를 말한다.

14. “날씨해설”이란 기상현황과 전망, 원인, 날씨변동 가능성 등 예보 관련사항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기적으로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15. “검증”이란 발표한 예보 및 특보와 관측자료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비교 검토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준시각)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기준시각은 한국표준시에 따른 24시간제로 한다.

제5조(세부시행지침의 운용) ① 예보국장은 예보업무 수행 과정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예보용어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태풍센터장은 태풍예보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이하 “지방예보관서”라 한다)의 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예보

제1절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제6조(예보자료의 분석) ① 「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예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일기도(예상일기도를 포함한다)
2. 수치예보자료
3. 기상통계자료
4. 위성·레이더 등 관측자료
5. 그 밖에 예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예보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분석하여 지방예보관서의 예보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기상현상에 대한 분야별 전문 분석과 예보 지원을 위하여 예보분석관을 둘 수 있다.

제7조(예보의 생산 및 발표) ① 예보관서의 장은 예보의 종류에 따라 발표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예보국장은 지방예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①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의 대상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육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별표 1

2. 육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 별표 2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초단기예보, 단기예보, 중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정한다.

제9조(초단기예보) ① 예보국장은 초단기예보를 매 10분마다 발표하며, 필요시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② 초단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각 호의 지점을 이은 영역 중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예보국장은 이 지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초단기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1. 좌상: 북위 43.3935°, 동경 123.3102°

2. 우상: 북위 43.2175°, 동경 132.7750°

3. 좌하: 북위 31.7944°, 동경 123.7613°

4. 우하: 북위 31.6518°, 동경 131.6423°

③ 초단기예보의 실황요소 및 예보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황요소: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강수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예보요소: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하늘상태, 강수량, 낙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단기예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일 8회(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17시, 20시, 23시) 단기예보를 발표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각별 예보대상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2시, 05시, 08시, 11시, 14시 발표 단기예보: 오늘(발표시각이 속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4일째 되는 날까지

2. 17시, 20시, 23시 발표 단기예보: 오늘부터 5일째 되는 날까지

② 단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지점을 이은 영역 중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를 대상으로 하며, 예보관서의 장은 이 지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단기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북한지역에 대해서는 세부 대상구역을 달리할 수 있다.

③ 단기예보의 예보요소는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하늘상태, 강수확률, 강수형태, 강수량, 눈의 양으로 한다. 다만, 예보대상기간에 따라 예보요소를 달리할 수 있다.

④ 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단기예보를 활용하여 일 3회(05시, 11시, 17시) 통보문을 작성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중기예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일 2회(06시, 18시) 중기예보를 발표하며, 기상상황에 따라 수정하여 발표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각별 예보대상기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06시 발표 중기예보: 중기예보를 발표한 날(이하 이 항에서 “발표일”이라 한다)부터 5일째 되는 날부터 8일째 되는 날까지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예보하고, 발표일부터 9일째 되는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까지는 일 단위로 예보

2. 18시 발표 중기예보: 발표일부터 6일째 되는 날부터 8일째 되는 날까지는 오전과 오후로 구분하여 예보하고, 발표일부터 9일째 되는 날부터 11일째 되는 날까지는 일 단위로 예보

② 중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광역예

보의 대상구역 중 서해5도, 울릉도·독도를 제외한 구역으로 한다.

③ 중기예보의 예보요소는 하늘상태, 강수형태,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확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④ 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중기예보를 활용하여 통보문을 작성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2절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제12조(기상영향에 대한 예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발표한다.

1. 관심: 일상적인 활동이 조금 불편한 수준, 취약한 대상에서는 일부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2. 주의: 해당 지역 일부에서 다소 피해가 예상되는 수준
3. 경고: 해당 지역 곳곳에서 현저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단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4. 위험: 해당 지역 대부분에 피해가 있고, 곳곳에 극심한 피해가 나타나 영향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

② 예보관서의 장은 기상영향에 대한 위험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를 일 1회 발표하고 필요 시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

③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별표 3의 육상에 대한 특

보의 세부 대상구역으로 한다.

- ④ 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기상영향에 대한 예보를 활용하여 통보문을 작성하고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3절 태풍예보

제13조(태풍예보) ① 국가태풍센터장은 영 제8조의4제1항에 따른 대상 구역(이하 이 조에서 “대상구역”이라 한다)에서 태풍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풍예보를 발표하며, 태풍이 소멸하거나 대상구역을 벗어날 때까지 일 4회(04시, 10시, 16시, 22시) 발표한다.

② 국가태풍센터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발표시각과 다르게 태풍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1. 대상구역 내에서 2개 이상의 태풍이 발생한 경우
2. 대상구역 외부에서 발생한 태풍이 대상구역 내로 이동해 온 경우
3. 그 밖에 국가태풍센터장이 태풍예보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태풍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은 발표시각을 기준으로 120시간 이내로 한다.

제4절 해양기상예보

제14조(해양기상예보자료의 분석)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분석하는 자료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제15조(해양기상예보 생산 및 발표) ① 예보관서의 장은 해양기상예보의 종류에 따라 발표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예보국장은 예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예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해양기상예보의 세부 대상구역) ①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북위 27도선 이북(以北), 동경 140도선 이서(以西)의 북서해역으로 한다.

② 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이 경우 앞바다와 먼바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앞바다: 서해와 남해는 별표 5의 각 경계 지점 중 백령도 동단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동쪽 12해리(약 22km)까지 각 경계 지점의 위도 및 경도를 순서대로 연결하는 선 안의 해역, 동해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우리나라 기선에서 12해리 안의 해역

2. 먼바다

가. 안쪽먼바다: 별표 6에 따른 각 경계의 안쪽 해역 중 앞바다를 제외한 해역

나. 바깥먼바다: 우리나라 영해로부터 200해리(약 370km)까지의 해역 중 앞바다와 안쪽먼바다를 제외한 해역

③ 해양기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은 별표 7과 같다.

- ④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기상 단기예보, 해양기상 중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정한다.

제17조(해양기상 단기예보) ①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발표시각 및 예보 대상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기예보”는 “해양기상 단기예보”로 본다.

- ②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9조제2항 각 호의 지점을 이은 영역 중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의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하며, 예보관서의 장은 이 지역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어 해양기상 단기예보를 발표할 수 있다.

- ③ 해양기상 단기예보의 예보요소는 기온, 상대습도, 풍향, 풍속, 하늘상태, 강수확률, 강수형태, 유의파고로 한다. 다만, 예보대상기간에 따라 예보요소를 달리 제공할 수 있다.

- ④ 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해양기상 단기예보를 활용한 통보문 작성과 통보에 대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단기예보”는 “해양기상 단기예보”로 본다.

제18조(해양기상 중기예보) ① 해양기상 중기예보의 발표시각 및 예보 대상기간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기예보”는 “해양기상 중기예보”로 본다.

- ② 해양기상 중기예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으로 하되, 앞바다와 먼바다의 구분없이 하나의 예보구역으로 한다.

- ③ 해양기상 중기예보의 예보요소는 하늘상태, 강수형태, 유의파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④ 예보관서의 장은 발표된 해양기상 중기예보를 활용한 통보문의 작성과 통보에 대해서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특보

제19조(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발표와 해제) ①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예보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 중 관할구역에 대하여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발표한다. 다만, 태풍 특보는 예보국장이 발표한다.

② 영 제8조의2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특보의 기준 중 폭염특보 발표 시 기준이 되는 일 최고 체감온도는 제26조의2에 따른 산출식 중 습도를 고려한 산출식을 사용한다. <신설 2025. 6. 13.>

③ 영 제8조의2제2항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특보의 기준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 중 폭풍해일 특보의 지역별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25. 6. 13.>

④ 예보관서의 장은 강수량, 온도, 풍속 등의 기상요소가 영 제8조의2제2항 및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도 지리적 또는 지역적 특성으로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발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 6. 13.>

⑤ 강풍, 풍랑, 호우 및 폭풍해일 특보 발효 중 태풍 특보를 발표해야

할 경우 발효 중인 특보의 해제 없이 태풍 특보로 변경하여 발표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에도 태풍 특보의 해제 없이 다른 특보로 변경하여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3.>

⑥ 예보관서의 장은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구역의 기상상황이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벗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해제를 즉시 발표해야 한다. 다만, 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5. 6. 13.>

⑦ 예보국장은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신속한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예보국장이 제공한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를 발표해야 한다. <신설 2025. 6. 13.>

제20조(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세부 대상구역) ①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육상에 대한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황사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별표 9와 같다.

② 영 제9조제7항에 따른 해양기상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 중 서해중부해상, 서해남부해상, 남해서부해상, 제주도해상, 남해동부해상, 동해남부해상, 동해중부해상으로 한다.

③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해상에 대한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특정관리해역으

로 지정하여 해당 구역에만 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1. 평수구역(「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중 제3구부터 제11구까지의 구역)

2. 연안바다

가. 거제도 동쪽 남해해상과 동해해상은 해안선에서 2해리 안의 해역(평수구역과 중첩되는 해역은 평수구역 경계로부터 1해리 안의 해역)

나. 남해군 남동부해상, 제주특별자치도(본섬), 추자도 및 울릉도 주변해상은 해안선에서 1해리 안의 해역

다. 우도 및 가파도 주변 해상은 해안선에서 0.5해리 안의 해역

3. 그 밖에 지리적 영향으로 해상상태가 인근 예보구역과 크게 상이하여 지방예보관서의 장이 따로 정한 해역

제21조(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내용) ①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보의 종류

2. 발표구역

3. 발표일시 및 발효일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은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 발표 후 제28조에 따른 기상정보로 발표할 수 있다.

③ 강풍 및 풍랑 특보를 발표할 때에는 해제 예상일시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제 예상일시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알려야

한다.

④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해제를 발표하거나 제3항에 따른 강풍 및 풍랑 특보의 해제 예상일시를 늦추어 발표할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22조(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 ①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예보 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예비특보 및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예비특보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태풍 예비특보는 예보국장이 발표한다.

②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은 제20조에 따른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구역의 세부 대상구역으로 한다.

③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 및 해양기상 특보가 발표되었을 때에는 별도로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발표로 대체한다. 다만,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가 발표된 구역에 특보 및 해양기상 특보가 발표되지 않거나 특보 및 해양기상특보의 발표 가능성이 낮아 지면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해제를 발표해야 한다.

④ 발표된 예비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의 통보와 관련한 사항은 제 23조 및 제24조를 따른다.

제4장 특보의 통보

제23조(통보대상기관의 선정 및 관리) ① 영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2

항제3호에서 “기상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보 및 예비특보,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해양기상 특보 및 해양기상예비특보(이하 이 장에서는 “특보”라 한다)의 수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말하며, 예보국장이 매년 지정한다.

②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의 재해방지를 위하여 영 제12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별도의 통보대상기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영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보를 수신하는 기관을 통보대상기관으로 하고, 예보국장은 통보대상기관을 관리하는 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특보 통보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④ 통보대상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소관 통보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연 2회 변동사항을 전수조사하고 예보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통보대상기관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은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정상수신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예보국장에 보고해야 한다.

제24조(특보의 통보) ① 예보국장은 특보를 발표하거나 특보의 해제를 발표한 경우 해당 특보의 내용이 포함된 통보문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보국장은 해양기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과

특정관리해역에 대한 해당 통보문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특보를 발표하거나 특보의 해제를 발표한 경우 해당 특보의 내용이 포함된 통보문을 작성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기관 중 관할구역에 속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항로가 포함된 다른 예보관서의 관할구역에 특보가 발표된 경우 이를 관할구역에 위치한 통보대상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⑤ 예보관서의 장은 필요시 문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특보를 전달할 수 있다.

제25조(통보시스템 운영 및 통보결과의 관리) ① 예보기술과장은 특보의 원활한 통보를 위하여 통보시스템을 운영·관리해야 한다.

② 예보기술과장은 특보의 통보결과를 통보시스템에 보관 및 유지해야 하며, 예보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5장 기상실황 및 추이 등에 대한 정보

제26조(실황감시) ① 예보관서의 장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른 관할 해상구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실황감시와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② 예보 및 해양기상예보와 다른 기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기상 발생시에는 관련사항을 일반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의2(체감온도 산출방법) 체감온도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관측자료 또는 예보를 사용하여 별표 10의 산출식에 따라 산출한다.

[본조신설 2025. 6. 13.]

제27조(날씨해설) 예보관서의 장은 특정한 시각을 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날씨해설을 발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하여 발표할 수 있다.

1. 초단기 날씨해설: 일 4회 발표하되 필요시 단기 날씨해설에 포함하여 발표
2. 단기 날씨해설: 일 2회 발표
3. 중기 날씨해설: 일 1회 발표

제28조(기상정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영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추이와 향후 예상, 유의점 및 발생 원인 등을 알리기 위하여 기상정보를 발표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지방예보관서의 장은 예보와 다른 기상상황이 발생하거나 위험기상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기상청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지역별 맞춤형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제29조(기상속보) ① 총괄예보관은 영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기상상황이 급변하여 긴급하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상속보를 발표할 수 있다. 다만, 신속한 발표와 전파를 위하여 기상속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최소화할 수 있다.

② 기상속보는 기상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표한다.

③ 기상속보 발표 시 정보통신기술과장은 기상속보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제30조(해구별 해양기상정보) ① 해양기상기후과장은 해구별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3. 27.>

② 해구별 해양기상정보는 북위 25°부터 46°까지, 동경 119°부터 140°까지에 포함된 해상 영역을 대상구역으로 한다.

③ 해구별 해양기상정보는 단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에 대하여 파고, 파주기(일정한 지점에서 파랑의 마루를 관측한 이후에 다음 마루가 지나가는 데 걸리는 시간), 파향, 풍향, 풍속, 수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31조(상세안개정보) ① 예보관서의 장은 안개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상세안개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상세안개정보의 대상구역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으로 하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내륙과 해안을 포함하여 구역을 구분할 수 있다.

③ 상세안개정보에는 예상 가시거리, 지속시간, 주의구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안개 다발구간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태풍 위험 상세정보) ① 예보국장은 태풍으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태풍 위험 상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태풍 위험 상세정보의 대상구역은 제20조에 따른 특보 및 해양기상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으로 한다.

③ 육상에 대한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에 태풍 특보의 발표가 예상될 때 일 2회(06시, 18시) 태풍 위험 상세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④ 태풍 위험 상세정보에는 태풍 현황 및 예상정보, 위험요인별 예상정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며, 유사태풍사례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6장 예보기술지원

제33조(기술지원) 예보국장, 수치모델링센터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은 예보관서의 장에게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예보자료의 이용) ① 예보국장은 각종 일기도와 보조도 등의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예보관서의 예보업무에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② 예보국장은 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분석자료 이외에 위성과 레이더에 의한 기상관측 및 분석, 수치예보자료, 그 밖에 예보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소관부서로 하여금 수집·분석·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태풍예보의 지원) 국가태풍센터장은 제13조에 따른 태풍예보 발표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해야 한다.

제7장 예보 및 특보의 사후분석과 검증

제36조(사후분석) ① 예보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후분석의 대상은 예보와 기상실황과의 차이 등이 일정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큰 기상현상으로 하며, 사후분석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 ② 예보기술과장은 효율적으로 사후분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예보 및 특보의 검증) ① 예보국장은 발표된 예보와 특보에 대하여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 ② 예보국장은 발표된 예보와 특보를 검증할 경우 검증의 종류, 방법, 대상, 기준 및 요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목적상 불가피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8조(검증결과의 활용) ① 예보국장은 예보와 특보의 검증 결과를 예보업무의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② 예보국장은 검증 또는 평가 결과를 임의로 분류하거나 내용을 변경·요약·발췌하여 발간함으로써 결과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발간자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수치예보자료의 분석) ① 예보관서의 장은 예보와 특보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수치예보자료의 예측성을 분석해야 한다.

- ② 예보국장은 예보관서의 수치예보자료 분석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부서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치예보자료의 분석 대상, 내용 등 관련 세부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예보업무의 기록

제40조(예보업무의 기록) ① 예보관서의 장은 향후 예보 및 특보 업무 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예보와 특보 업무 수행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② 예보관서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상황감시와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방법, 내용 등 관련 세부사항 및 기록 양식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장 방재비상근무

제41조(방재비상근무) ① 예보국장, 수치모델링센터장, 지방기상청장, 기상지청장,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기상레이더센터장은 태풍, 호우 등 위험기상현상으로 막대한 기상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때에는 방재비상근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방재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42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6. 13.>

부 칙 <기상청훈령 제1119호, 2024. 5. 3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보대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전에 발표하는 단기예보 및 중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과 해양기상 단기예보 및 해양기상 중기예보의 예보대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해양기상업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예보업무규정」 제3조제13호”를 “「예보업무규정」 제3조제6호”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예보업무규정」 제19조제2항”을 “「예보업무규정」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② 지진화산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가목의 대상 해역 중 “「예보업무규정」 제10조제3항의 별표 4 (해상국지예보구역)”를 “「예보업무규정」 제16조제3항의 별표 7(해양기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로 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142호, 2025. 3. 2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상청훈령 제1153호, 2025. 6. 1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육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제8조제1항제1호 관련)

구역 명칭(약칭)	대상 지역	관할 예보관서
서울·인천·경기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서해5도 제외) 및 경기도 지역	수도권기상청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강화군 우도	
대전·세종·충청남도 (충남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지역	대전지방기상청
충청북도 (충북)	충청북도 지역	청주기상지청
강원도영서 (강원영서)	강원특별자치도 중 양구군, 영월군, 원주시,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화천군, 홍천군, 횡성군 지역	강원지방기상청
강원도영동 (강원영동)	강원특별자치도 중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태백시 지역	
광주·전라남도 (전남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역	광주지방기상청
전북자치도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전주기상지청
부산·울산·경상남도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	부산지방기상청
대구·경상북도 (경북권)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울릉군 제외) 지역	대구지방기상청
울릉도·독도	경상북도 울릉군 지역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제주지방기상청
평안남도 (평남)	평안남도 지역	본 청
평안북도 (평북)	평안북도 지역	
황해도	황해도 지역	
함경남도 (함남)	함경남도 지역	
함경북도 (함북)	함경북도 지역	

[별표 2] <개정 2025. 6. 13.>

육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제8조제1항제2호 관련)

구역 명칭	대상 지역	관할 예보관서
서울, 수원, 용인, 안성, 화성, 오산, 평택,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안산, 성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하남,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김포, 부천	해당 특별시, 시·군	수도권 기상청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대청도 ·소청도·연평도, 강화군 우도	
강화	인천광역시 강화군(우도 제외)	
옹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백령도·대청도 ·소청도·연평도 제외)	
부산, 김해,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진주, 하동, 산청, 사천, 거창, 합천, 함양, 울산, 양산, 밀양, 창원, 함안, 창녕, 의령	해당 광역시, 시·군	부산지방 기상청
광주, 나주, 담양, 화순, 장성, 함평, 영광, 고흥, 보성, 완도,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순천, 곡성, 구례, 광양, 목포, 무안, 영암	해당 광역시, 시·군	광주지방 기상청
흑산도·홍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신안	전남 신안군(흑산면 제외)	
거문도·초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여수	전남 여수시(삼산면 제외)	
고창, 부안, 전주, 완주, 진안, 무주, 남원, 장수, 순창, 군산, 김제, 익산, 정읍, 임실	해당 시·군	전주기상 지청
강릉, 속초, 고성, 양양, 동해, 삼척, 태백, 평창,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원주, 횡성, 춘천, 홍천, 인제, 양구	해당 시·군	강원지방 기상청
대전, 세종,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천안, 아산, 예산, 보령, 서천, 청양, 부여, 서산, 태안, 당진, 홍성	해당 광역시·특별자치시, 시·군	대전지방 기상청
청주, 증평, 괴산, 진천, 충주, 음성, 제천, 단양, 옥천, 영동, 보은	해당 시·군	청주기상 지청

구역 명칭	대상 지역	관할 예보관서
대구	대구광역시(군위군 제외)	대구지방 기상청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고령, 청도, 경산, 구미, 김천, 칠곡, 성주, 포항, 경주, 영천, 상주, 문경, 영주, 예천, 영덕, 울진, 영양, 봉화, 안동, 의성, 청송	해당 시·군	
울릉도·독도	경북 울릉군	
제주도북부	제주시(구좌읍·한림읍·우도면·한경면· 추자면·제주도북부중산간·제주도산지 제외)	제주지방 기상청
제주도동부	제주시 중 구좌읍·우도면(제주도북부 중산간 제외), 서귀포시 중 성산읍·표 선면(제주도남부중산간 제외)	
제주도서부	제주시 중 한림읍·한경면(제주도북부 중산간 제외), 서귀포시 중 대정읍	
제주도남부	서귀포시(대정읍·성산읍·표선면· 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산지 제외)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주시(추자면·우도면 제외) 중 해발고도 200m 이상에서 600m 미만 지역	
제주도남부중산간	서귀포시 중 해발고도 200m 이상에서 600m 미만 지역	
제주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중 산지 지역(해발고도 600m 이상)	
추자도	제주시 추자면	

비고: 이 표에서 “중산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발고도 200m 이상 600m 미만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별표 3]

육상에 대한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제12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구역 명칭		대상 지역	관할 예보관서
서울	서울동남권	서울특별시(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동북권	서울특별시(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서울서남권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	
	서울서북권	서울특별시(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경기도	수원, 용인, 안성, 화성, 오산, 평택,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안산, 성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하남,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 광명, 시흥, 김포, 부천	해당 시·군	수도권 기상청
인천	인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강화	인천광역시 강화군(우도 제외)	
	옹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제외)	
서해5도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강화군 우도	
부산	부산동부	부산광역시(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남구)	부산지방 기상청
	부산중부	부산광역시(금정구, 북구,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부산서부	부산광역시(강서구, 사하구,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울산	울산동부	울산광역시(북구, 중구, 남구, 동구)	
	울산서부	울산광역시(울주군)	
경상남도	김해,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진주, 하동, 산청, 사천, 거창, 함천, 함양, 양산, 밀양, 창원, 함안, 창녕, 의령	해당 시·군	
광주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지방 기상청
전라남도	나주, 담양, 화순, 장성, 함평, 영광, 고흥, 보성, 완도, 장흥, 강진, 해남, 진도, 순천, 곡성, 구례, 광양, 목포, 무안, 영암	해당 시·군	

구역 명칭		대상 지역	관할 예보관서
	흑산도 · 홍도	전남 신안군 흑산면	
	신안	전남 신안군(흑산면 제외)	
	거문도 · 초도	전남 여수시 삼산면	
	여수	전남 여수시(삼산면 제외)	
전북 자치도	고창, 부안, 전주, 완주, 진안, 무주, 남원, 장수, 순창, 군산, 김제, 익산, 정읍, 임실	해당 시 · 군	전주기상 지청
강원도	태백, 영월, 철원, 화천, 원주, 횡성, 춘천	해당 시 · 군	강원지방 기상청
	강릉평지	강릉시(주문진읍, 구정면, 강동면, 옥계면, 사천면, 홍제동, 중앙동, 옥천동, 교1동, 교2동, 포남1동, 포남2동, 초당동, 송정동, 내곡동,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동해평지	동해시(천곡동, 송정동, 북삼동,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북평동, 망상동)	
	속초평지	속초시(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조 양동, 청호동)	
	삼척평지	삼척시(원덕읍, 근덕면, 남양동, 성내동, 교동, 정라동)	
	정선평지	정선군(정선읍, 신동읍, 남면)	
	고성평지	고성군(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양양평지	양양군(양양읍, 손양면, 현남면)	
	강원북부산지	속초시 산지(대포동, 노학동), 인제군 산지 (서화면, 북면, 기린면, 상남면), 고성군 산지(간성읍, 수동면), 양양군 산지(강현면, 서면, 현북면), 양구군 산지(해안면)	
	강원중부산지	강릉시 산지(연곡면, 성산면, 왕산면), 평창군 산지(진부면, 대관령면), 홍천군 산지(내면)	
	강원남부산지	동해시 산지(삼화동), 삼척시 산지(도계읍, 미로면, 하장면, 노곡면, 가곡면, 신기면), 정선군 산지(여량면, 임계면, 북평면, 화암면, 사북읍, 고한읍)	
	홍천평지	홍천군(홍천읍, 화촌면, 두촌면, 내촌면, 서석면, 동면, 남면, 서면, 북방면)	
	양구평지	양구군(방산면, 양구읍, 동면, 국토정중앙면)	
	평창평지	평창군(평창읍,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인제평지	인제군(인제읍, 남면)	
대전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지방

구역 명칭		대상 지역	관할 예보관서
세종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기상청
충청남도	공주, 논산, 계룡, 금산, 천안, 아산, 예산, 보령, 서천, 청양, 부여, 서산, 태안, 당진, 홍성	해당 시·군	
충청북도	청주, 증평, 괴산, 진천, 충주, 음성, 제천, 단양, 옥천, 영동, 보은	해당 시·군	청주기상 지청
대구	대구(군위 제외), 대구(군위)	대구광역시(군위군 제외), 대구광역시 군위군	대구지방 기상청
경상북도	고령, 청도, 경산, 구미, 김천, 칠곡, 성주, 포항, 경주, 영천, 상주, 문경, 영주, 예천, 영덕, 안동, 의성, 청송	해당 시·군	
	봉화평지	봉화군(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명호면, 상운면)	
	울진평지	울진군(울진읍, 평해읍, 북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영양평지	영양군(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경북북동산지	울진군 산지(금강송면), 봉화군 산지(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영양군 산지(일월면, 수비면)	
울릉도· 독도	울릉도·독도	경북 울릉군	
제주도	제주도북부	제주시(구좌읍·한림읍·우도면·한경면· 추자면·제주도북부중산간·제주도산지 제외)	제주지방 기상청
	제주도동부	제주시 중 구좌읍·우도면(제주도북부중산간 제외), 서귀포시 중 성산읍·표선면 (제주도남부중산간 제외)	
	제주도서부	제주시 중 한림읍·한경면(제주도북부 중산간 제외), 서귀포시 중 대정읍	
	제주도남부	서귀포시(대정읍·성산읍·표선면· 제주도남부중산간·제주도산지 제외)	
	제주도북부중산간	제주시(추자면·우도면 제외) 중 해발 고도 200m 이상에서 600m 미만 지역	
	제주도남부중산간	서귀포시 중 해발고도 200m 이상에서 600m 미만 지역	
	제주도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중 산지 지역(해발고도 600m 이상)	
	추자도	제주시 추자면	

비고: 이 표에서 “중산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 해발고도 200m 이상 600m 미만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별표 4]

해양기상광역예보의 대상구역(제16조제2항 관련)

구역 명칭		대상 해역	관할 예보관서		
중기예보	단기예보		중기예보	단기예보	
서해북부 해상	앞바다	북위 38도선 이북의 서해역	수도권 기상청		
	먼바다				
서해중부 해상	앞바다	별표 7에 따른 인천·경기북부앞바다, 인천·경기남부앞바다, 충남북부앞바다, 충남남부앞바다를 포함하는 해역			
	안쪽 먼바다	북위 36도선에서 북위 38도선까지의 서해역 중 서해중부앞바다를 제외한 해역으로 하며,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서해북부해상과 서해중부해상의 경계와 동경 124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8도 00분 00초, 동경 124도 00분 00초)과 서해중부해상과 서해남부해상의 경계와 동경 125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바깥 먼바다				
서해남부 해상	앞바다	별표 7에 따른 전북북부앞바다, 전북남부앞바다, 전남북부서해앞바다, 전남중부서해앞바다, 전남남부서해앞바다를 포함하는 해역	광주지방 기상청		
	북 쪽	안쪽 먼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의 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북위 36도선간의 서해역 중 서해남부앞바다를 제외한 해역으로 하며,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바깥 먼바다			
	남 쪽	안쪽 먼바다			가.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의 경계: 전라남도 신안군 태도리의 상태도 북단 끝 위도선(북위 34도 27분 08초) 나.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 서해중부해상과 서해남부해상의 경계와 동경 125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6도 00분 00초, 동경 125도 00분 00초)과 서해남부북쪽먼바다와 서해남부남쪽먼바다 경계와 동경 124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4도 27분 08초, 동경 124도 00분 00초)을 지나 서해남부해상과 제주도해상의 경계와 동경 124도 30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13분 47초, 동경 124도 30분 00초)까지 연결한 선
		바깥 먼바다			
남해서부 해상	앞바다	별표 7에 따른 전남서부남해앞바다, 전남동부남해앞바다를 포함하는 해역	광주지방 기상청	광주지방 기상청	
	동쪽 먼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구역 명칭		대상 해역	관할 예보관서	
중기예보	단기예보		중기예보	단기예보
	서쪽 먼바다	126도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북위 33도 40분 18초, 동경 125도 22분 56초 지점과 북위 33도 20분 위도선과 제주도서쪽앞바다 경계 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09초)을 지나 북위 33도 20분 위도선과 제주도동쪽앞바다와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20분 00초, 동경 127도 09분 20초)에서 북위 33도 34분 48초, 동경 127도 50분 00초 지점까지 연결한 선 사이의 남해역 중 남해서부앞바다와 제주도앞바 다를 제외한 해역으로 하며, 동쪽먼바다와 서쪽 먼바다의 경계는 전남서부남해앞바다와 전남동부 남해앞바다 경계의 남쪽 끝단과 제주도북부앞바다와 제주도동부앞바다 경계의 북쪽 끝단(북위 33도 46분 00초, 동경 126도 45분 00초)을 연결한 직선 으로 한다.		제주지방 기상청
제주도 해상	앞바다	별표 7에 따른 제주도북부앞바다, 제주도동부앞바다, 제주도남부앞바다, 제주도서부앞바다를 포함하는 해역		제주지방 기상청
	남서쪽 안쪽 먼바다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남단(북위 34도 17분 26초, 동경 126도 31분 35초)과 북위 34도, 동경 126도의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경상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사이 남해역 중 남해서부해상과 제주도앞바다를 제외한 해역으로 하며, 남서쪽먼바다와 남동쪽 먼바다,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남동쪽 안쪽 먼바다	가. 남서쪽먼바다와 남동쪽먼바다의 경계: 제주도 서부앞바다와 제주도남부앞바다의 먼바다 경계점(북위 32도 59분 32초, 동경 126도 17분 40초)을 지나 제주도남쪽안쪽먼바다와 제주도 남쪽바깥먼바다 경계선과 만나는 지점(북위 32도 15분 09초, 동경 126도 17분 40초)까지의 경도선		
	남쪽 바깥먼바다	나.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 서해남부 해상과 제주도해상의 경계와 동경 124도 30분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13분 47초, 동경 124도 30분 00초)에서 북위 32도 15분 09초, 동경 126도 17분 40초 지점을 지나 제 주도해상과 남해동부해상 경계와 북위 32도 36분 54초 위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2도 36분 54초, 동경 127도 50분 00초)까지 연결 한 선		

구역 명칭			대상 해역	관할 예보관서	
중기예보	단기예보			중기예보	단기예보
남해동부 해상	앞바다		별표 7에 따른 경남서부남해앞바다, 거제시동부 앞바다, 경남중부남해앞바다, 부산앞바다를 포함 하는 해역	부산지방 기상청	
	안쪽 먼바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경계점(북위 35도 19분 47초, 동경 129도 18분 15초)과 북위 34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지나는 직선, 전라남도-경상 남도 도경계선과 북위 34도 40분, 동경 127도 50분 지점을 지나 동경 127도 50분 경도선을 연결한 선 사이의 남해역 중 남해동부앞바다를 제외한 해역으로 하며,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제주도해상과 남해동부해상 경계와 북위 32도 36분 54초 위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2도 36분 54초, 동경 127도 50분 00초)과 남해동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 경계와 북위 33도 40분 44초 위도 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40분 44초, 동경 130도 10분 05초)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바깥 먼바다				
동해남부 해상	앞바다		별표 7에 따른 울산앞바다, 경북남부앞바다, 경북 북부앞바다를 포함하는 해역	대구지방 기상청	대구지방 기상청
	북 쪽	안쪽 먼바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해안경계점(북위 35도 19분 47초, 동경 129도 18분 15초)과 북위 34도, 동경 130도의 지점을 지나는 직선과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해안경계점(북위 37도 08분 47초)의 위도 선간의 동해역 중 동해남부앞바다를 제외한 해 역으로 하며,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 안쪽먼바다 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다음과 같다.		
		남 쪽	안쪽 먼바다		가. 북쪽먼바다와 남쪽먼바다의 경계: 울산광역 시와 경상북도의 해안 경계점(북위 35도 39 분 03초)을 지나는 위도선
	바깥 먼바다		나. 안쪽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 남해동부 해상과 동해남부해상 경계와 북위 33도 40분 44초 위도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3도 40분 44초, 동경 130도 10분 05초)과 동해남부북 쪽먼바다와 동해남부남쪽먼바다 경계와 동 경 131도 17분 27초 경도선이 만나는 지점 (북위 35도 39분 03초, 동경 131도 17분 27 초)을 지나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 경계와 동경 131도 17분 27초 경도선이 만나 는 지점(북위 37도 08분 47초, 동경 131도 17 분 27초)까지 연결한 선		
동해중부 해상	앞바다		별표 7에 따른 강원남부앞바다, 강원중부앞바다, 강원북부앞바다를 포함하는 해역	강원지방 기상청	

구역 명칭		대상 해역	관할 예보관서	
중기예보	단기예보		중기예보	단기예보
	안쪽 먼바다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해안경계점의 위도선(북위 37도 08분 47초)과 북위 39도선간의 동해역 중 동해중부앞바다를 제외한 해역으로 하며, 안쪽 먼바다와 바깥먼바다의 경계는 동해중부해상과 동해남부해상 경계와 동경 131도 17분 27초 경도 선이 만나는 지점(북위 37도 08분 47초, 동경 131도 17분 27초)과 북위 39도, 동경 130도 05분 10초 지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한다.		
	바깥 먼바다			
동해북부 해상	앞바다 먼바다	북위 39도선 이북의 동해역		
대화되 해상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9도 30분, 동경 133도 27분, ②북위 39도 50분, 동경 134도 10분, ③북위 40도 20분, 동경 135도 30분, ④북위 38도 40분, 동경 135도 30분, ⑤북위 38도 40분, 동경 133도 00분, ⑥북위 38도 53분, 동경 133도 00분)	강원지방 기상청	
연해주해상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9도 40분, 동경 133도 45분, ②북위 39도 40분, 동경 133도 17분, ③북위 41도 30분, 동경 131도 23분, ④북위 41도 58분, 동경 134도 00분, ⑤북위 45도 50분, 동경 138도 43분, ⑥북위 45도 27분, 동경 139도 19분, ⑦북위 44도 36분, 동경 139도 03분, ⑧북위 40도 30분, 동경 135도 52분)		
규슈 해상	서쪽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3도 20분, 동경 129도 30분, ②북위 33도 20분, 동경 127도 56분, ③북위 32도 20분, 동경 127도 30분, ④북위 29도 40분, 동경 127도 30분, ⑤북위 2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⑥북위 27도 00분, 동경 127도 30분, ⑦북위 31도 00분, 동경 131도 00분, ⑧북위 31도 00분, 동경 129도 30분)	제주지방 기상청	
	남쪽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31도 00분, 동경 132도 00분, ②북위 31도 00분, 동경 131도 00분, ③북위 27도 00분, 동경 127도 30분, ④북위 27도 00분, 동경 132도 00분)		
동중국해상		다음 해상 지점을 연결한 해역 (①북위 29도 40분, 동경 123도 00분, ②북위 29도 40분, 동경 127도 30분, ③북위 27도 00분, 동경 126도 00분, ④북위 27도 00분, 동경 121도 10분)		

비고: 앞바다 중 해양기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 관할 예보관서는 별표 7에 따른다.

[별표 5]

앞바다·안쪽먼바다 경계 지점의 위도 및 경도(제16조제2항제1호 관련)

구분	경계 지점	위도(N)	경도(E)
서해중부 해상	백령도 동단	37° 57 ' 41 "	124° 44 ' 48 "
	대청도 동단	37° 50 ' 33 "	124° 43 ' 44 "
	소청도 동단	37° 46 ' 45 "	124° 46 ' 20 "
	울도 서단	37° 02 ' 11 "	125° 58 ' 30 "
	궁시도 서단	36° 39 ' 53 "	125° 51 ' 18 "
	대길산도 서단	36° 16 ' 59 "	126° 11 ' 35 "
서해남부 해상	말도 서단	35° 51 ' 29 "	126° 18 ' 52 "
	안마도 북단	35° 22 ' 00 "	126° 02 ' 00 "
	안마도 남단	35° 20 ' 00 "	126° 01 ' 00 "
	부남도 서단	35° 05 ' 00 "	125° 55 ' 00 "
	칠발도 서단	34° 47 ' 14 "	125° 47 ' 08 "
	우이도 북단	34° 37 ' 00 "	125° 51 ' 00 "
	우이도 남단	34° 35 ' 00 "	125° 49 ' 00 "
	상조도 서단	34° 20 ' 00 "	125° 59 ' 00 "
	상조도 동단	34° 19 ' 00 "	126° 03 ' 00 "
남해서부 해상	당사도 서남단	34° 05 ' 55 "	126° 35 ' 02 "
	당사도 동남단	34° 05 ' 48 "	126° 36 ' 08 "
	청산도 남단	34° 09 ' 01 "	126° 54 ' 27 "
	황제도 북단	34° 11 ' 57 "	127° 04 ' 33 "
	초도 남단	34° 12 ' 42 "	127° 15 ' 48 "
	소거문도 남단	34° 16 ' 49 "	127° 23 ' 55 "
	외나로도 남단	34° 24 ' 41 "	127° 29 ' 30 "
	연도 남단	34° 24 ' 29 "	127° 48 ' 21 "
남해동부 해상	욕지도 남단	34° 36 ' 40 "	128° 14 ' 22 "
	소매물도 남단	34° 37 ' 05 "	128° 32 ' 56 "
	기장군 장안읍 고리 남동쪽 12해리	35° 08 ' 00 "	129° 25 ' 00 "

[별표 6] <개정 2025. 6. 13.>

안쪽면바다·바깥면바다 경계의 위도 및 경도(제16조제2항제2호가목 관련)

구분		위도(N)	경도(E)
서해중부해상		38° 00 ' 00 "	124° 00 ' 00 "
서해남부해상	북쪽	36° 00 ' 00 "	125° 00 ' 00 "
	남쪽	34° 27 ' 08 "	124° 00 ' 00 "
제주도해상	남서쪽	33° 13 ' 47 "	124° 30 ' 00 "
	남동쪽	32° 15 ' 09 "	126° 17 ' 40 "
남해동부해상		32° 36 ' 54 "	127° 50 ' 00 "
동해남부해상	남쪽	33° 40 ' 44 "	130° 10 ' 05 "
	북쪽	35° 39 ' 03 "	131° 17 ' 27 "
동해중부해상		37° 08 ' 47 "	131° 17 ' 27 "
동해북부해상		39° 00 ' 00 "	130° 05 ' 10 "

[별표 7]

해양기상국지예보의 대상구역(제16조제3항 관련)

구역 명칭	대상 해역	관할 예보관서
인천·경기북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인천광역시(강화군, 서해 5도), 경기도 김포시의 관할 해역	수도권 기상청
인천·경기남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인천광역시(강화군, 서해 5도 제외), 경기도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의 관할 해역	
경남서부남해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거제시 망산각에서 통영시 가왕도 북단, 가왕도 남단에서 어유도 북단, 어유도 남단에서 대매물도 북단, 대매물도 남단에서 소매물도 북단, 소매물도 남단을 이르는 선의 서쪽 해역, 거제시(둔덕면, 거제면, 동부면 서쪽, 남부면 망산각을 기준으로 서쪽), 통영시(용남면, 광도면 지역 중 진해만과 인접한 해역 제외), 고성군(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회화면 지역 제외), 남해군, 사천시, 하동군(금남면·금성면·진교면 지역)의 관할 해역	부산지방 기상청
거제시동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거제시(옥포동, 아주동, 능포동, 장승포동, 일운면, 동부면 동쪽, 남부면 망산각을 기준으로 동쪽)의 관할해역, 거제시 망산각에서 통영시 가왕도 북단, 가왕도 남단에서 어유도 북단, 어유도 남단에서 대매물도 북단, 대매물도 남단에서 소매물도 북단, 소매물도 남단을 이르는 선의 동쪽 해역	
경남중부남해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거제시(장목면, 하청면, 연초면, 장평동, 고현동, 사등면 지역), 창원시, 통영시(용남면, 광도면 지역 중 진해만과 인접한 해역), 고성군(거류면, 동해면, 마암면, 회화면 지역)의 관할 해역	
부산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부산광역시의 관할 해역	
울산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울산광역시의 관할 해역	
충남북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홍성군의 관할 해역	대전지방 기상청
충남남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보령시, 서천군의 관할 해역	
전남북부서해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영광군, 함평군의 관할 해역	광주지방 기상청
전남중부서해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흑산면 지역 제외), 영암군의 관할 해역	

구역 명칭	대상 해역	관할 예보관서
전남남부서해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진도군, 해남군(화원면·문내면·황산면·산이면·화산면·송지면일부 지역)의 관할 해역	
전남서부남해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해남군(북평면·북일면·송지면일부 지역)의 관할 해역	
전남동부남해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고흥군, 보성군의 관할 해역	
전북북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군산시, 김제시의 관할 해역	전주기상 지청
전북남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고창군, 부안군의 관할 해역	
제주도북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제주시(구좌읍·우도면·한림읍·한경면 지역 제외)의 관할 해역	제주지방 기상청
제주도동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제주시(구좌읍·우도면 지역), 서귀포시(성산읍·표선면 지역)의 관할 해역	
제주도남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서귀포시(성산읍·표선면·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동단의 서쪽 지역 제외)의 관할 해역	
제주도서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제주시(한림읍·한경면 지역), 서귀포시(대정읍 상모리 송악산 동단의 서쪽 지역)의 관할 해역	
경북남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경주시, 포항시의 관할 해역	대구지방 기상청
경북북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영덕군, 울진군의 관할 해역	
강원남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동해시, 삼척시의 관할 해역	강원지방 기상청
강원중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강릉시의 관할 해역	
강원북부 앞바다	제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앞바다 해역 중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의 관할 해역	

[별표 8] <개정 2025. 6. 13.>

폭풍해일 특보의 지역별 기준(제19조제3항 관련)

대상 지역	조위관측소 (국립해양조사원)	기준값(cm)		관할관서
		주의보	경보	
김포시	인천	966	1,004	수도권기상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시흥시				
안산시	안산	940	960	
화성시				
평택시	평택	1,010	1,030	
당진시	대산	921	941	대전지방기상청
서산시				
태안군	안흥	769	789	
홍성군	보령	844	864	
보령시				
서천군	장항	792	832	
군산시	군산	776	810	전주기상지청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영광	770	790	
영광군	영광	770	790	광주지방기상청
함평군				
무안군	목포	522	544	
신안군 (흑산면제외)				
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진도	425	467	
흑산도·홍도	흑산도	430	450	
해남군	완도	460	480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고흥군	고흥발포	422	448	

대상 지역	조위관측소 (국립해양조사원)	기준값(cm)		관할관서
		주의보	경보	
보성군				
거문도	거문도	389	419	
여수시	여수	420	440	
순천시				
광양시				
하동군	여수	420	440	부산지방기상청
남해군				
사천시	통영	322	370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거제도	249	281	
창원시	마산	240	290	
부산광역시	부산	183	214	
울산광역시	울산	120	170	
경주시	포항	109	150	대구지방기상청
포항시				
영덕군	후포	80	130	
울진군				
울릉도·독도	울릉도	102	140	
삼척시	묵호	89	130	강원지방기상청
동해시				
강릉시				
양양군	속초	89	130	
고성군				
속초시				
추자도	추자도	363	377	제주지방기상청
제주도북부	제주	329	359	
제주도동부	성산포	296	320	
제주도서부	모슬포	324	334	
제주도남부	서귀포	347	375	

[별표 9]

황사 특보의 세부 대상구역(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구역 명칭	대상 지역	관할 예보관서
서울	서울특별시	수도권 기상청
인천	인천광역시(서해5도 제외)	
서해5도	인천광역시 중 옹진군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강화군 우도	
경기 남부	용인, 안성, 평택, 이천, 여주	
경기 중부	수원, 화성, 오산,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안산, 광명, 시흥, 부천	
경기 북부	파주, 고양, 양주, 의정부, 동두천, 포천, 연천, 김포	
경기 동부	성남, 광주, 양평, 하남, 가평, 구리, 남양주	
강릉평지, 속초평지, 고성평지, 양양평지, 동해평지, 삼척평지, 태백, 평창평지, 영월, 정선평지, 철원, 화천, 원주, 횡성, 춘천, 홍천평지, 인제평지, 양구평지, 강원북부산지, 강원중부산지, 강원남부산지	별표 3의 대상지역으로 함	강원지방 기상청
대전	대전광역시	대전지방 기상청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충남 동남부	공주, 청양, 부여, 논산, 계룡, 금산	
충남 북부	천안, 아산, 당진	
충남 서부	서산, 태안, 예산, 홍성, 보령, 서천	
충북 북부	충주, 제천, 단양	청주기상 지청
충북 중부	청주, 진천, 증평, 괴산, 음성	
충북 남부	보은, 옥천, 영동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지방 기상청
울산	울산광역시	
김해,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진주, 하동, 산청, 사천, 거창, 함천, 함양, 양산, 밀양, 창원, 함안, 창녕, 의령	해당 시·군	

대구	대구광역시(군위군 제외)	대구지방 기상청
군위	대구광역시 군위군	
경북 동부	포항, 경주, 경산, 영천, 청도, 청송, 영덕, 영양평지(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석보면), 봉화평지(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명호면, 상운면), 울진평지(울진읍, 평해읍, 북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경북북동산지(울진군 산지(금강송면), 봉화군 산지(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영양군 산지(일월면, 수비면))	
경북 서부	구미,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예천, 의성, 성주, 고령, 칠곡	
울릉도·독도	울릉도·독도	
광주	광주광역시	광주지방 기상청
전남 동부	순천, 여수,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전남 서부	목포,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진도, 신안	
전남 중부	담양, 화순, 장흥, 나주, 강진, 장성, 완도	
전북 중부	전주, 익산, 완주	전주기상 지청
전북 서부	군산, 김제, 정읍, 고창, 부안	
전북 동부	진안, 무주, 남원, 장수, 순창, 임실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지방 기상청

[별표 10] <신설 2025. 6. 13.>

체감온도 산출식(제26조의2 관련)

구분	산출식
습도를 고려한 산출식	$\text{체감온도} = -0.2442 + 0.55399 T_w + 0.45535 T_a - 0.0022 T_w^2 + 0.00278 T_w T_a + 3.0$ ▶ T_a: 기온(°C), T_w: 습구온도(T_a 및 상대습도(RH)를 이용한 추정식*) * $T_w = T_a \text{ATAN}[0.151977(RH+8.313659)^{1/2}] + \text{ATAN}(T_a + RH) - \text{ATAN}(RH-1.67633) + 0.00391838RH^{3/2} \text{ATAN}(0.023101RH) - 4.686035$
풍속을 고려한 산출식	$\text{체감온도} = 13.12 + 0.6215 T_a - 11.37 V^{0.16} + 0.3965 V^{0.16} T_a$ ▶ T_a: 기온(°C), V: 10분 평균풍속(km/h)

※ 습도를 고려한 산출식은 5~9월, 풍속을 고려한 산출식은 10월~다음 해 4월의 기간에 대해 우선 적용하되, 기온의 변동 폭이 큰 4~5월, 9~10월에는 필요시 습도를 고려한 산출식과 풍속을 고려한 산출식을 병용할 수 있다.